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 1 장 총 칙</p> <p>제1조(상호)</p> <p>본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케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ICK Co.,Ltd." (약호는 ick)라 표기한다.</p> <p>제2조(목적)</p> <p>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카드 제조업 2.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데이터 베이스 제조 및 수출입업 4. 신용카드 제조 및 기기 수출입업 5. 하드웨어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우편물 발송 및 제조 판매업 7. 전산카드 제조기기 판매 및 수출입업 8. 프로젝트 컨설팅업 9. 전용회선 사업 10. 멀티 미디어 영상 사업 11. 데이터 베이스 연구소설립 및 운영업 12. 전산카드 제조 및 개발연구소설립 및 운영업 13. e-비즈니스업 14. 웹포털사업 15. 전자상거래업 16. 단말기 제조업 17. 지능형 교통시스템 제조 판매업 18. 부가 통신업 19. 정보통신 공사업 20. 광고 대행업 21. 주차시설 관리업 22. 용역사업 23. 위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p>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p> <p>① 본 회사는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둔다.</p>	<p>제 1 장 총 칙</p> <p>제1조(상호)</p> <p>본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케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ICK Co.,Ltd." (약호는 ick)라 표기한다.</p> <p>제2조(목적)</p> <p>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카드 제조업 2.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데이터 베이스 제조 및 수출입업 4. 신용카드 제조 및 기기 수출입업 5. 하드웨어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우편물 발송 및 제조 판매업 7. 전산카드 제조기기 판매 및 수출입업 8. 프로젝트 컨설팅업 9. 전용회선 사업 10. 멀티 미디어 영상 사업 11. 데이터 베이스 연구소설립 및 운영업 12. 전산카드 제조 및 개발연구소설립 및 운영업 13. e-비즈니스업 14. 웹포털사업 15. 전자상거래업 16. 단말기 제조업 17. 지능형 교통시스템 제조 판매업 18. 부가 통신업 19. 정보통신 공사업 20. 광고 대행업 21. 주차시설 관리업 22. 용역사업 23. 위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p>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p> <p>① 본 회사는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둔다.</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공장, 지점, 출장소, 영업소 등을 둘 수 있다.</p> <p>제4조(공고방법)</p> <p>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nsoft.com]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개정된 공고방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장 주 식</p> <p>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p> <p>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 주로 한다.</p> <p>제6조(일주의 금액)</p> <p>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한 주의 금액은 금 이백원 으로 한다.</p> <p>제7조(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p> <p>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만 주(1주의 금액 10,000원 기준)로 한다.</p> <p>제8조(주권의 종류)</p> <p>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p> <p>※ (조문 신설)</p> <p>제9조(주식, 주권의 종류 및 내용)</p> <p>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정관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800,000주 로 한다.</p> <p>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p>	<p>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공장, 지점, 출장소, 영업소 등을 둘 수 있다.</p> <p>제4조(공고방법)</p> <p>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nsoft.com]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개정된 공고방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장 주 식</p> <p>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p> <p>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 주로 한다.</p> <p>제6조(일주의 금액)</p> <p>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한 주의 금액은 금 이백원 으로 한다.</p> <p>제7조(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p> <p>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만 주(1주의 금액 10,000원 기준)로 한다.</p> <p>제8조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에 삭제됨</p> <p><삭제></p> <p>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p> <p>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p> <p>제9조(주식, 주권의 종류 및 내용)</p> <p>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정관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800,000주 로 한다.</p> <p>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p>	<p>전자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신설</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p> <p>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p> <p>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p> <p>⑧ 우선주는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이하"상환우선주식"이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1. 상환우선주식은 회사가 이사회결의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때부터 자유로이 상환일로부터 1개월 전에 우선주주에게 통지하고 보통주 전환의 청구가 없을 경우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상환함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p> <p>2. 상환우선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상환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상환 가능이익의 범위 내 에서 위 제1호의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p> <p>3. 상환우선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있으며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조정이있을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보유하게 된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p>	<p>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p> <p>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p> <p>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p> <p>⑧ 우선주는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이하"상환우선주식"이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1. 상환우선주식은 회사가 이사회결의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때부터 자유로이 상환일로부터 1개월 전에 우선주주에게 통지하고 보통주 전환의 청구가 없을 경우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상환함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p> <p>2. 상환우선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상환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상환 가능이익의 범위 내 에서 위 제1호의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p> <p>3. 상환우선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있으며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조정이있을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보유하게 된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p>	
<p>⑨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신주인수권)</p> <p>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p> <p>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⑨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신주인수권)</p> <p>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p> <p>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2. 상법 제542조의 3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p> <p>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p> <p>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 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하는 경우</p>	<p>2. 상법 제542조의 3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p> <p>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p> <p>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 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하는 경우</p>	
<p>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p>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및 제3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 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p>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및 제3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 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p>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p>	<p>제12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 주식으로 한다.</p> <p>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 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 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p> <p>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 주식으로 한다.</p> <p>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 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 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p> <p>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p>	<p>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p>	
<p>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14조(주식의 소각)</p>	<p>제14조(주식의 소각)</p>	
<p>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제15조(명의개서대리인)</p>	<p>제15조(명의개서대리인)</p>	
<p>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p> <p>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p> <p>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p>	<p>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p>	<p>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 내용 반영</p>
<p>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서명 등 신고)</p> <p>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에 삭제됨</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전자등록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할 필요 없으므로 조항 삭제</p> <p>전자등록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할 필요 없으므로 조항 삭제</p>
<p>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② 회사는 매년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 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② 회사는 매년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 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3 장 사 채</p>	<p>제 3 장 사 채</p>	
<p>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 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 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 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 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정관 제15조 및 정관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정관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6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p>
<p>제 4 장 주 주 총 회</p> <p>제21조(소집시기)</p> <p>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제22조(소집권자)</p> <p>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p> <p>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의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24조(소집지)</p> <p>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25조(의장)</p>	<p>제 4 장 주 주 총 회</p> <p>제21조(소집시기)</p> <p>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제22조(소집권자)</p> <p>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p> <p>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의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24조(소집지)</p> <p>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25조(의장)</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p> <p>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27조(주주의 의결권)</p> <p>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p> <p>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p> <p>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p> <p>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p> <p>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 본 회사의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p> <p>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p> <p>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27조(주주의 의결권)</p> <p>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p> <p>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p> <p>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p> <p>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p> <p>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 본 회사의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p> <p>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 및 제33조, 제38조 제3항, 제38조 제4항의 각 정관 조항 개정 및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한 이사해임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80이상의 찬성과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p> <p>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p> <p>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p> <p>제 5 장 이 사, 감 사, 이 사 회</p> <p>제33조(이사의 수)</p> <p>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34조(이사의 선임)</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5조(이사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36조(이사의 직무)</p> <p>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7조(이사의 의무)</p> <p>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 및 제33조, 제38조 제3항, 제38조 제4항의 각 정관 조항 개정 및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한 이사해임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80이상의 찬성과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p> <p>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p> <p>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p> <p>제 5 장 이 사, 감 사, 이 사 회</p> <p>제33조(이사의 수)</p> <p>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34조(이사의 선임)</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5조(이사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36조(이사의 직무)</p> <p>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7조(이사의 의무)</p> <p>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p> <p>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p> <p>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p> <p>③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임기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에서 해임 될 경우에는 회사는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금으로 대표이사에게 30억 원, 이사에게 20억 원을 퇴직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p> <p>④ 본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효력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에 발생한다.</p> <p>제39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p> <p>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p> <p>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p> <p>③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임기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에서 해임 될 경우에는 회사는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금으로 대표이사에게 30억 원, 이사에게 20억 원을 퇴직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p> <p>④ 본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효력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에 발생한다.</p> <p>제39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⑤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 집권자로 한다.</p> <p>제40조(이사회 의 결의 방법)</p> <p>① 이사회 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 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 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41조(이사회 의 의사록)</p> <p>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42조(상담역 및 고문)</p> <p>회사의 이사회 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 다.</p> <p>제43조(대표 이사의 선임)</p> <p>대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제44조(대표 이사의 직무)</p> <p>대표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45조(감사의 수)</p> <p>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p> <p>제46조(감사의 선임)</p> <p>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 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p>⑤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 집권자로 한다.</p> <p>제40조(이사회 의 결의 방법)</p> <p>① 이사회 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 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 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41조(이사회 의 의사록)</p> <p>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42조(상담역 및 고문)</p> <p>회사의 이사회 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 다.</p> <p>제43조(대표 이사의 선임)</p> <p>대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제44조(대표 이사의 직무)</p> <p>대표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45조(감사의 수)</p> <p>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p> <p>제46조(감사의 선임)</p> <p>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 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p>	<p>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p>	
<p>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로 한다.</p>	<p>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로 한다.</p>	
<p>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48조(감사의 직무 등)</p>	<p>제48조(감사의 직무 등)</p>	
<p>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제3항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제3항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9조(감사록)</p>	<p>제49조(감사록)</p>	
<p>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p>	<p>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p>	<p>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p>	
<p>제 6 장 회 계</p>	<p>제 6 장 회 계</p>	
<p>제51조(사업연도)</p>	<p>제51조(사업연도)</p>	
<p>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p>	<p>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법률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 개정 내용 반영</p>
<p>제54조(이익금의 처분)</p>	<p>제54조(이익금의 처분)</p>	
<p>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p>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 정관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p> <p>제55조(이익배당)</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 제52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p> <p>제56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p> <p>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 <p>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p> <p>제 7 장 부 칙</p> <p>제57조(내규제정)</p> <p>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58조(적용범위)</p> <p>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끝.</p> <p>※ (정관 시행 시기 명기)</p>	<p>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p> <p>제55조(이익배당)</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 제52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p> <p>제56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p> <p>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 <p>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p> <p>제 7 장 부 칙</p> <p>제57조(내규제정)</p> <p>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58조(적용범위)</p> <p>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p> <p>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p>	